

Part.3

기존 나눔 통계를 활용한 국내 나눔 총량 추계:
재정패널에 나타난 개인 기부를 중심으로

—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I. 서론

2013년 초에 정부와 정치권에 합의에 따라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8개 공제 항목은 합계액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한제 적용을 받는 8개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및 창투조합 등 출자금, 신용카드를 포함한다. 따라서 2013년 연말정산 때부터 기부금의 소득공제 상한선이 적용된다. 만일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넘으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혀 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지정기부금보다 먼저 합계액에 산입한다는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나머지 7개의 공제항목의 소득공제 합계가 2,5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2,500만원과 다른 공제금액 합계액의 차액만큼만 적용됨으로써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2,500만원으로 소득공제액에 상한액을 설정하는 취지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금감면을 막고 이를 통해 세수를 추가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데 있다. 그러나 특별공제 종합한도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포함함으로써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의 기부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을 때는 기부금 지출에 대하여 납세자의 한계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경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원을 기부하는 데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이 $1 \times (1 - \text{한계세율})$ 이 되지만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없어지게 되면 1원을 기부하기 위해 1원을 지출해야 하므로 동일한 크기의 재원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정치권에서 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 종합한도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⁶⁾ 현재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 종합한도에서 제외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892억원의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현 제도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 종합한도에 포함함으로써 정부입장에서 그만큼의

6) 김영환 의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893)을 발의하였다.

조세수입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특별공제 종합한도로 인한 개인 기부 감소의 효과가 소득세수 증가의 효과를 크게 상회할 정도로 발생한다면 기존에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 사회에 제공되던 공공재를 정부에서 훨씬 더 큰 비용을 들여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2,500만원으로 소득공제액에 상한액을 둬으로써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민간이 담당하던 분야까지 정부에서 책임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복지재원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정기부금을 종합한도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부금 총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기부금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여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 제도의 적용으로 기부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즉,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민간의 기부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를 국가 전체로 환산하였을 때 도입 전에 비하여 몇 %의 기부금 감소가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개인 기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데 있다. 현재 국가 전체의 기부금 총량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식적인 국가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설령 종합소득 한도의 도입으로 인한 기부금 감소크기를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몇 %의 감소인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 기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못한 이유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했다기보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위에서 제기한 연구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개인 기부의 총량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기부 연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데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에 기부금 공제가 포함됨으로써 예상되는 기부금 감소 규모를 추정하는 후속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 개인 기부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단순 추계한 개인 기부 총량을 소개한다. 제Ⅲ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재정패널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지는 제Ⅳ절에서는 개인 기부금 총량을 추정

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 방법과 기부 총량 추정 결과를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제 V 절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II. 선행연구 검토

1. 개인 기부 총량 추정 방법 및 해석에서의 유의사항

기부금이란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개인 기부금 총량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자료를 이용한 접근 방법은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만을 포함하거나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제외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부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2000년에 연세대학교 동서문화연구원에서 개인 기부 관련 최초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후 뒤이어 사단법인 “볼런티어21”과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는 만 19세 이상 국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는 개인 기부지수 실태조사(Giving Index)를 지난 2001년 처음 시도한 이후 2002년부터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나눔 문화 관련항목이 처음으로 추가되어 개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자세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는 행정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의 다양한 기부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응답자의 기억오류로 인한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특히 고액기부자들이 표본에 포함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설문조사 접근방법의 경우 설문조사마다 기부금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

세대학교 동서문화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순수 종교적 헌금을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한 반면에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설문지침에서 종교단체 운영목적의 헌금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개인 기부금의 총량은 표본의 이질성뿐만 아니라 설문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추정된 기부 총량을 해석할 때는 이러한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2. 기존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개인 기부 총량 추계

1) 자선 및 기부활동에 관한 조사 (연세대학교 동서문화연구원)

2000년에 전국 18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동서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한 “자선 및 기부활동에 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 기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1999년 한 해 동안 기부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평균 기부금은 연간 약 11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⁷⁾ 여기에 1999년 18세 이상 총 추계인구수를 곱하여 개인 기부금 총량을 추정하면 대략적으로 3.8조원 정도로 추산된다.⁸⁾

2) 자원봉사 활동 및 기부에 대한 조사 (볼런티어21)

2002년에 전국 20세 이상 개인을 조사한 볼런티어21의 “자원봉사 활동 및 기부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에 기부활동에 참여한 응답자의 비율이 52.3%에 달하고 평균 기부액은

7) 연세대학교 동서문화연구원의 조사에 대한 내용은 손원익·박태규(2008)에서 인용하였다. 평균기부액은 1999년에 기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기부금 평균금액인 175,728원에 기부참여율 63%를 곱하여 저자가 계산한 결과이다.

8) 1999년 18세 이상 총인구수는 통계청 자료(www.kosis.kr)의 2000년 20세 이상 인구수에 15~19세 인구를 이용하여 저자가 단순 계산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18~19세 인구수는 15~19세의 각 나이별로 일정한 비율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구하였다.

55,438원이었다⁹⁾.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개인 기부 총량은 1.9조원에 이른다. 두 조사 결과를 단순 비교하면 2년 만에 기부금 규모가 50% 가까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볼런티어21의 조사에서는 종교단체의 불우이웃돕기와 같은 사업을 위한 기부만을 기부금에 포함하였고 동서문화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종교기관 현금을 모두 기부금의 범주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두 조사결과의 일관성 있는 비교는 할 수 없다.

3) Giving Korea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에서는 2001년부터 개인들의 기부에 대하여 설문조사(이하 Giving Korea)를 실시하고 있다. 2001년 처음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기부와 종교 이외의 자선적 목적을 위한 기부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그러나 2001년 조사에서는 종교단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현금을 한 경우에도 종교적 목적을 위한 기부로 간주되어 이 금액이 제외되었으므로 볼런티어21의 2002년 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2002년에 실시한 두 번째 Giving Korea 조사에서는 종교단체의 운영목적에 위한 현금과 보시를 분리하고 자선적 기부금만을 별도로 조사함으로써 볼런티어21의 자선적 기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기부금 범위를 설정하였다. 2002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전년도 기부참여율이 48%로 나타났고, 한국인 1인당 평균기부금은 51,775원¹⁰⁾이었으며 이를 이용해 추계한 개인 기부 총량은 1.8조원으로 계산된다. 볼런티어21의 2002년 조사결과¹¹⁾와 비교하였을 때 기부참여율과 개인 기부 총량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2002년 조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004년에 실시된 세 번째 Giving Korea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 자선적 기부에 대한 참여율이 64.3%로 2001년에 비해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운영목적의 현금을 제외한 한국인 1인당 평균기부금은 57,859원¹²⁾이었으며 이를 이용해

9) 볼런티어 21의 2001년 조사에 대한 내용은 손원익·박태규(2008)에서 인용하였다. 평균기부액은 주2)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자가 계산한 결과이다. 2001년에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기부금 평균금액인 106,000이고 기부참여율 52.3%임.

10) Giving Korea 2002 p.19에서 인용.

11) 평균기부금에 20세 이상 총인구를 곱하여 단순 추계한 결과임.

12) Giving Korea 2004 p.5에서 인용.

추계한 개인 기부 총량은 2.1조원으로 계산된다. 기부문화연구소의 2006년, 2008년, 2010년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조사 전년도 of 자선목적 개인 기부 총량을 단순하게 추계하면 각각 2.6조원, 4.1조원, 6.6조원이 된다¹³⁾.

Giving Korea는 2002년 조사에서부터 종교적 목적의 현금과 보시와 같은 기부금을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Giving Korea 자료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목적의 종교적 기부금을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개인 기부 총량을 추계한 결과를 <표 2-1>에 요약하였다¹⁴⁾.

(단위: 조원)

연도	종교적 기부금을 제외한 순수 자선목적의 기부금	종교적 기부금을 포함한 기부금
2001	1.8	7.8
2003	2.1	8.9
2005	2.6	7.3
2007	4.1	12.7
2009	6.6	17.8

<표 2-1> Giving Korea 자료를 이용한 개인 기부 총량 단순추계결과

주: 우리나라 20세 이상 총인구수를 이용하여 단순 추계한 결과임.

자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Giving Korea 2002, 2004, 2006, 2008, 2010.

아래 <표 2-2>에서는 Giving Korea 2006, 2008, 2010의 자료를 이용하여 종교적 기부금을 순수 종교운영목적에 위한 기부금과 종교기관을 통한 자선적 기부금으로 분해하여 그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종교단체 기부금 중 평균적으로 약 14% 정도는 자선적 기부금으로 파악되었다.

13) 19세 이하 국민의 기부금은 0이라는 가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14) 2009년의 추계결과와 강철희·민인식(2010)의 추정 결과와도 매우 유사하다.

(단위: 조원, %)

연도	종교단체 헌금 및 보시목적의 기부금	종교단체를 통한 자선적 목적의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합계
2005	4.7(84)	0.9(16)	5.6(100)
2007	8.6(88)	1.1(12)	9.7(100)
2009	11.2(85)	2.0(15)	13.2(100)
평균	8.2(86)	1.3(14)	9.5(100)

<표 2-2> Giving Korea 자료를 이용한 종교단체 기부금 분해

주: 1. 우리나라 20세 이상 총인구수를 이용하여 단순 추계한 결과임.

2. 괄호는 비율을 의미.

자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Giving Korea 2006, 2008, 2010.

또한 Giving Korea 조사에서는 기부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2005년 이후 기관을 통한 기부(정당, 종교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문화예술단체, 자선단체 등)와, 개인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과 친구·이웃 등 가까운 지인 및 알지 못하는 부랑인 등)를 나누어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종교적 기부금을 모두 포함하였을 경우에 개인에게 직접 지출한 기부금은 전체 기부금의 5% 정도를 차지하였다.

(단위: 조원, %)

연도	기관·단체를 통한 기부금	개인에게 직접 지출한 기부금	합계
2005	7.0(96)	0.3(4)	7.3(100)
2007	11.7(92)	1.0(8)	12.7(100)
2009	17.1(96)	0.7(4)	17.8(100)
평균	11.9(95)	0.7(5)	12.8(100)

<표 2-3> Giving Korea 자료를 이용한 기부처별 기부금

주: 1. 우리나라 20세 이상 총인구수를 이용하여 단순 추계한 결과임.

2. 괄호는 비율을 의미.

자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Giving Korea 2006, 2008, 2010.

4) 사회조사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의 경우 전국 약 17,000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포괄하는 인구범위가 더 넓고 표본오차가 작다는 장점이 있다. 조사결과, 현금기부만으로 한정할 경우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이 16만 7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단순 추계할 경우 개인 기부 총량은 7.1조에 달한다¹⁵⁾. 사회조사의 경우 포괄하는 인구의 범위가 만 13세 이상으로 기부문화연구소의 조사보다 더 넓기 때문에 기부 총량이 크게 추계되는 면이 있으며, 만일 현물기부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더 크게 추계될 것이 예상된다.

3. 국세청자료를 이용한 개인 기부 총량 추계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 기부 총량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무자료는 소득공제를 신청한 기부금의 규모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기부자와 공제한도를 넘어선 기부금을 고려한다면 실제 기부금 규모는 세무자료상의 기부금 규모보다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는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의 소득공제대상 기부금을 연도별로 보여준다.

(단위: 조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근로소득자	4.20	4.15	4.27	4.64	4.86	5.18
종합소득자	1.14	1.28	1.40	1.51	1.67	1.90
합계	5.34	5.43	5.67	6.15	6.53	7.08

<표 2-4>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15) 사회조사의 기부금 조사결과는 박주연·이희길(2011)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1인당 평균 기부금액에 2010년 13세 이상 총인구수를 곱하여 저자가 계산한 결과이다. 계산과정은 주3)을 참조할 것.

주: 종합소득자의 경우 기부금 특별공제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필요 경비로 차감되는 기부금을 합한 금액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4. 소결

기존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추계결과, 설문조사가 진행된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순수 자선적 기부금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조사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의 경우 종교기관에 납부한 모든 기부금이 다 포함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Giving Korea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결과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난다.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국세청에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신고된 기부금이 Giving Korea 자료로 추계한 기부금 총량에 비하여 각각 73%, 43%,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실제로 소득공제 목적 이외의 기부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설문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기부를 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는 법인을 통하여 기부를 한 경우가 상당 수 포함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현상은 또한 설문조사 자료가 전국 대표성을 가진 표본을 포함하지 못하였거나, 설문 응답자들의 응답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 설문조사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표 2-4>의 소득공제대상 기부금의 경우 연도별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표 2-1>의 Giving Korea 자료로부터 추정한 개인 기부 총량의 경우 2005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¹⁶⁾에서 조사하는 재정패널이라는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 기부 총량을 새롭게 추정하여 보았다. 재정패널은 기본적으로 가구의 조세부담과 정부혜택에 초점을 맞춘 조사이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기부금 공제를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부금 공제금액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구에서 지출한 기부금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제Ⅲ절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재정패널 개요¹⁶⁾와 기부금 조사현황을 설명한다.

16) 제Ⅲ절 제1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5차 재정패널 조사 사용자안내서』의 내용을 발췌·요약하였다.

Ⅲ. 분석 자료

1. 재정패널 개요

1) 재정패널 조사목적

현행 국세청 자료는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국가와 가계에 미치는 영향 및 조세에 대한 부담과 복지 수혜자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조세 모의실험 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2008년부터 재정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재정패널은 표본을 추출하여 이 패널 표본들을 복수년도에 걸쳐서 관찰·조사하는 것으로서 패널에 포함된 표본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갖는다.

재정패널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국가와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가 개편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예측하고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후생증가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조세에 대한 부담과 복지 수혜자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패널 데이터는 소득, 지출, 조세, 복지수혜를 포괄하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의 연계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조세 모의실험 운용을 위한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조세 모의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정보와 함께 납세자들의 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패널은 서론에서 언급한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이 가구의 행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2) 재정패널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재정패널 조사의 설문구조를 살펴보면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조사와 가구원으로 인정된 개인¹⁷⁾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원조사로 나뉜다. 조사대상 가구는 제주도·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의 일반가구로 2008년 구축된 가구인 5,014가구와 2009년에 구축된 가구인 추가표본 620가구, 2009년 이후 분가하여 1차년도 이후부터 신규로 발생한 분가가구이다.

재정패널 가구조사의 조사항목은 크게 가구원의 인적현황, 주택 및 자동차 보유 현황, 가계지출현황,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복지현황, 자산 및 부채현황으로 구성되어있다. 가구원조사의 조사항목은 경제활동상태, 소득 및 연금·보험 지출현황, 연간 소득,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세 납부 유형과 소득공제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조사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의 전년도 정보를 조사한다. 단, 가구원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다.

재정패널은 2008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2년까지 5개 연도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5차년도 자료의 경우 2008년 원표본 유지율이 79.9%에 이를 정도로 매우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패널자료이다.

3) 소득증빙서류 수집

재정패널은 기존의 패널 데이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득공제 내역, 결정세액 등의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역을 모든 응답자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소득공제 내역은 각 항목별로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을 회상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공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수집하는 것도 조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연간 소득 내역과 공제내역, 결정세액 등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종합소득 신고자는 소득세를 자진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모든 서류를 다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공제명세서] 두 가지 서류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듯 재정패널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증빙서류를 수집한 것이다. 소득세 및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수집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점이 재정패널 데이터만의 우수성이라 할 수 있다.

17) 재정패널에서 재정패널조사에서 가구원은 조사대상년도에 6개월 이상 함께 동거한 혈연관계의 친족으로 정의한다. 다만, 2차 조사부터 학업만을 목적으로 분가한 초중고 및 미혼의 대학생(대학원생인 미포함), 원양어선 및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가족인 경우 6개월 이상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재정패널 표본설계와 가중치 개요

재정패널 조사의 표본 추출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한 조사구를 1차 추출단위로 하여 추출된 조사구에서의 일정 수의 가구를 2차적으로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층화 이단계 추출법)을 적용하여 1차년도 가구의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가구의 가중치란 기본적으로 각 가구가 재정패널 표본에 포함될 확률의 역수이다. 따라서 개별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이 가구가 대표하는 전국의 가구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가구의 가중치가 3,000인 경우에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가구가 전국에 3,000가구정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2차년도 이후 조사에서는 매년 분가로 인한 신규표본이 진입하거나 기존의 표본이 이탈할 확률을 조정하여 각 가구가 재정패널 표본에 포함될 확률을 계산하고 이의 역수를 가구의 횡단면 가중치로 적용하였다. 또한 재정패널의 경우 개인의 가중치는 가구의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재정패널에 속한 개인에게 부여된 가중치는 가구 가중치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이 대표하는 전국의 개인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재정패널에 포함된 가구원의 가중치를 모두 합하면 총인구수에 대한 추정치가 된다. 다만, 재정패널은 조사과정에서 제주도와 도서지역의 주민은 제외되었고, 가구원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총 인구보다 다소 작게 추정될 것이 예상된다.

3. 재정패널 개인 기부금 조사현황

재정패널은 1차년도 조사에서부터 가구설문에서 전년도 1년간 가구원의 기부금 지출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다. 먼저 조사대상 가구에서 전년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험이 있는지 묻고, 있다면 가구원 중 누가 납부하였는지 묻는다.

기부금에 대한 지출은 소득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단체에 정기적으로 내는 헌금이나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내는 성금 등 기부의 성격이 있는 금액은 모두 조사된다. 재정패널에서는 기부금을 ①정당, ②교육기관, ③사회복지기관, ④문화예술, ⑤종교, ⑥기타의 분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한

가구원이 같은 분야에 해당하는 두 개 이상의 기관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합쳐서 조사하고, 여러 분야에 기부를 하였다면 각각의 경우를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재정패널의 기부금 조사는 Giving Korea 자료와 비교하여 크게 두 가지 다른 점이 관찰된다. 첫째, 조사되는 기부금 지출은 개인이 아닌 기관에 기부한 경우만 해당된다. 따라서 가까운 이웃·친지·친구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는 조사되지 않는다. 둘째, 종교분야로 기부한 경우 순수 종교운영 목적의 현금 및 보시와 종교기관을 통한 자선적 기부금을 구분하지 않는다. 즉, 종교분야의 기부금 지출의 경우 두 가지 목적의 기부금이 혼합되어 있다.

IV. 분석 결과

1. 분석 방법론

재정패널 자료로부터 개인 기부금 총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재정패널 가구원에게 부여된 가중치를 이용하였다. 재정패널에 속한 가구원 중 누가 어느 분야에 작년 1년간 총 얼마의 기부금을 납부하였는지 알 수 있고, 가구원의 가중치는 해당 가구원이 전국 인구의 몇 명을 대표하는지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개인 기부 총량을 추정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quad TG_t = \sum_{i=1}^N W_{it} G_{it}$$

위의 식 (1)에서 TG_t 는 t 년도의 개인 기부 총량(Total Giving)을 의미한다. W_{it} 는 t 년도의 가구원에게 부여된 가중치를, G_{it} 는 그 가구원이 지출한 기부금 총량을 각각 나타낸다. 따라서 $W_{it}G_{it}$

는 재정패널 표본에 포함된 개인의 특성을 가진 전체 인구의 기부금 총량에 대한 추정량이 된다. 재정패널에 속한 모든 가구원의 를 합하면 우리나라 개인 기부 총량에 대한 추정량이 된다.

식 (1)에서 구한 TG_t 는 개인 기부 총량에 대한 추정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TG_t 에 대한 표준오차(SE)를 구해야 한다. TG_t 의 표준오차는 $\sum_{i=1}^N w_{it} G_{it}$ 분산의 제곱근이므로 의 표준오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G_{it} 의 공분산 구조를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에 포함된 가구와 가구원이 무작위추출 표본(random sample)이라는 가정을 이용한다. 즉, $E(G_{it}G_{jt})=0$ if $i \neq j$ 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2) \text{Var}(TG_t) = \text{Var}(G_{it}) \cdot \sum_{i=1}^N w_{it}^2$$

즉, G_{it} 의 공분산이 0이고 $\text{Var}(G_{it})$ 는 t 년도의 모든 i 가 동일하다는 결과를 적용한 결과 위와 같이 TG_t 의 분산을 구할 수 있고 이의 제곱근이 바로 표준오차가 된다. 표준오차를 구하게 되면 TG_t 의 95% 신뢰구간은 표준오차에 1.96을 곱한 값을 TG_t 의 추정량에 더하고 빼서 구할 수 있다. 즉, 95% 신뢰구간은 아래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widehat{TG}_t + 1.96SE, \widehat{TG}_t - 1.96SE]$$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기부금을 각 기부 분야별로 적용하거나 혹은 기부금을 분야에 따라 재 분류한 경우에도 부문별 기부 총량에 대한 추정량과 신뢰구간을 추정할 수 있다.

2. 추정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재정패널에서는 종교단체 기부금을 기부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묻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2-2>의 Giving Korea 자료를 이용한 종교단체 기부금 분해결과를 이용하여 종교단체 기부금 중 14%는 자선목적으로 기부되었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재정패널에 보고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이 비율을 적용하여 종교단체 현금 및 보시목적의 기부금과 종교단체를 통한 자선적 목적의 기부금으로 분리하여 추정하였다.

<표 2-5>는 재정패널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 분야별로 개인 기부 총량을 추정한 결과와 이를 모두 합한 개인 기부 총량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재정패널에 보고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개인 기부 총량은 2007년 7.7조원에서 2010년 9.2조원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8.6조원으로 약간 하락하였다. 기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2011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당에 대한 기부금과 문화예술 기부금은 금액과 전체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게 추정된 반면 표준오차는 상당히 크게 추정되어 전반적인 추세를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체 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 운영 목적의 기부금 비율이 75% 내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비율만 놓고 보면 Giving Korea 자료에 나타난 비율과 유사한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종교단체 기부금 중 14%는 자선목적으로 기부되었다는 가정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므로 단순비교는 의미가 없다.

(단위: 억원, %)

기부 분야	2007	2008	2009	2010	2011
정당	961 (413) [1.3]	626 (210) [0.8]	913 (239) [1.0]	669 (446) [0.7]	340 (145) [0.4]
교육기관	1769 (1937) [2.3]	1128 (475) [1.4]	710 (332) [0.8]	685 (240) [0.7]	379 (208) [0.4]

사회복지기관	6488 (1011) [8.4]	5794 (769) [7.2]	10601 (1426) [11.6]	11265 (1464) [12.2]	8856 (1323) [10.3]
문화예술	450 (228) [0.6]	66 (111) [0.1]	18 (14) [0.0]	352 (343) [0.4]	535 (471) [0.6]
종교단체 현금 및 보시목적의 기부금	56756 (3745) [73.8]	62212 (3434) [77.0]	67207 (3922) [73.2]	67538 (4266) [73.2]	63703 (3661) [74.4]
종교단체를 통한 자선적 목적의 기부금	9239 (610) [12.0]	10127 (559) [12.5]	10941 (638) [11.9]	10995 (694) [11.9]	10370 (596) [12.1]
기타	1206 (410) [1.6]	885 (402) [1.1]	1374 (311) [1.5]	798 (140) [0.9]	1435 (284) [1.7]
합계	76869 (4949) [100]	80838 (4192) [100]	91764 (4900) [100]	92302 (5282) [100]	85617 (4546) [100]

〈표 2-5〉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연도별 부문별 개인 기부 총량

주: 1. ()는 표준오차임.

2. []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재정패널 1차년도~5차년도.

〈표 2-6〉은 순수 자선목적의 기부금과 종교단체 운영목적의 기부금으로 나누어서 개인 기부 총량과 95% 신뢰구간을 표시하였으며, [그림 1~3]은 이를 그림으로 표현 결과이다. 순수 자선목적의 기부금은 2008년에 잠시 하락하였다가 2009년에 상승 반전하였으나 2011년에 다시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종교적 기부금의 경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하락하였다. 종교적 기부금을 포함한 개인 기부 총량은 종교적 기부금과 비슷한 추세가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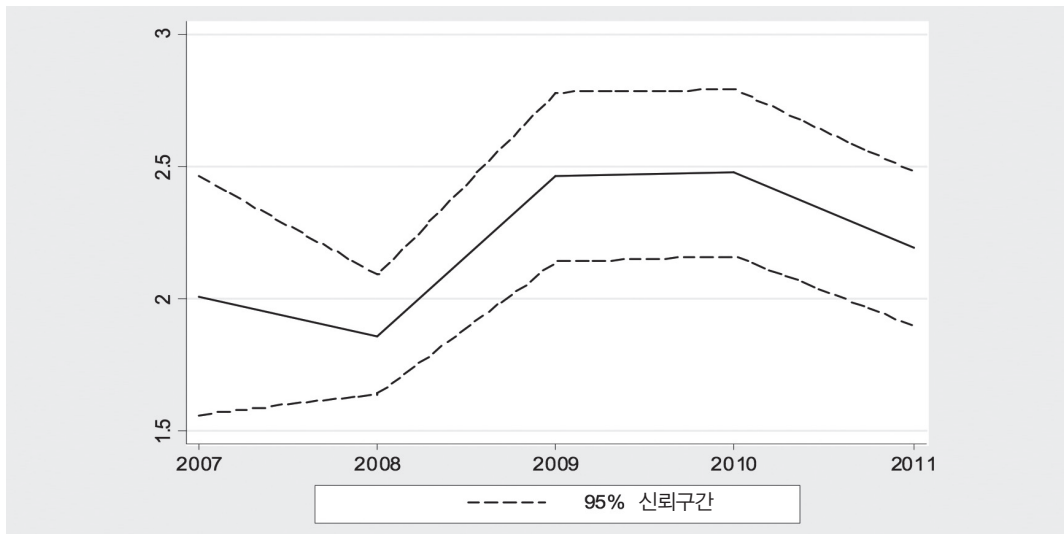
(단위: 조원)

연도	순수 자선목적의 기부금	종교적 헌금 및 보시목적의 기부금	합계
2007	2.01 [1.56, 2.46]	5.68 [4.94, 6.41]	7.69 [6.72, 8.66]
2008	1.86 [1.64, 2.09]	6.22 [5.55, 6.89]	8.08 [7.26, 8.91]
2009	2.46 [2.14, 2.78]	6.72 [5.95, 7.49]	9.18 [8.22, 10.14]
2010	2.48 [2.16, 2.79]	6.75 [5.92, 7.59]	9.23 [8.19, 10.27]
2011	2.19 [1.90, 2.48]	6.37 [5.65, 7.09]	8.56 [7.67, 9.45]

<표 2-6>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개인 기부 총량 추정

주: []는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자료: 재정패널 1차년도~5차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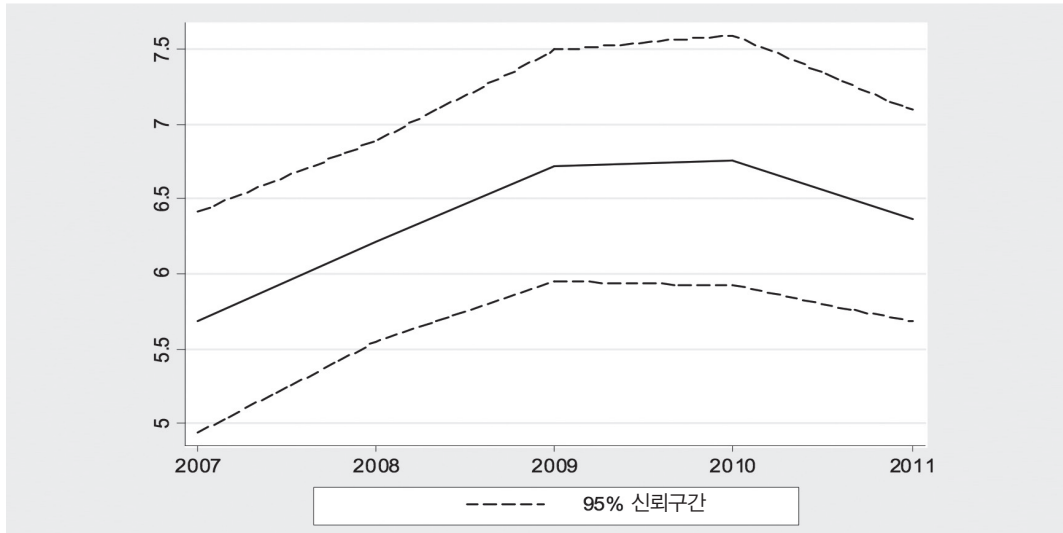
(단위: 조원)



<그림 1> 순수 자선목적 기부금 총량

자료: 재정패널 1차년도~5차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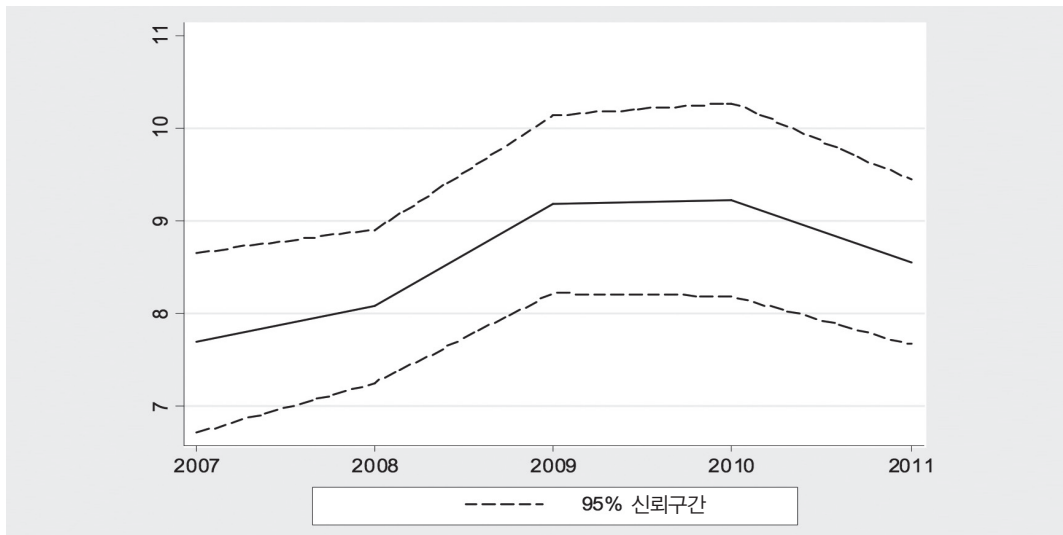
(단위: 조원)



<그림 2> 종교적 현금 및 보시목적의 기부금 총량

자료: 재정패널 1차년도~5차년도.

(단위: 조원)



<그림 3> 종교적 기부금을 포함한 개인 기부 총량

자료: 재정패널 1차년도~5차년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들의 기부 총량을 추정한 결과를 국세청에 신고된 기부금 특별공제 항목의 총합계 및 Giving Korea 자료로부터 추계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표 2-7>에서는 세 자료가 동시에 존재하는 2007년과 2009년의 기부 총량을 비교하였다.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된 기부금 특별공제 총합보다는 크고, Giving Korea 설문자료로부터 추계한 값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 자료 및 Giving Korea 자료에서 추계한 결과는 재정패널 자료에서 추정한 총량의 95% 신뢰구간 밖에 있었다.

(단위: 조원)

연도	국세청	Giving Korea	재정패널
2007	5.43	12.7	7.69
2009	6.15	17.8	9.18

<표 2-7>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개인 기부 총량 추정

주: 종교목적의 현금 및 보시가 포함된 금액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Giving Korea 2008, 2010, 재정패널 1차년도~5차년도

재정패널 자료에서 조사된 기부금에는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기부자도 포함되어 있고, 공제한도를 넘어선 기부금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 신고 기부금보다 크게 추정된 것은 예상된 일이다. 그러나 Giving Korea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재정패널에서 조사하는 기부금에는 개인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지만 <표 2-3>이 보이는 바와 같이 개인에게 직접 기부한 기부금의 규모는 전체 기부금의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이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둘째, 패널조사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먼저 애초에 설계된 재정패널의 표본에 고액기부자가 포함될 확률이 지극히 낮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가구를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기부 경향이 높은 고소득 가구가 표본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송헌재(2012)는 1차년도 원표본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2차년도 이탈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패널조사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액기부자들이 표본에서 이탈하여 전체 기부금 총량에 대한 추정치가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국 대표성 측면에서 재정패널이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고액기부자가 포함될 확률이 작다는 것이 Giving Korea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는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재정패널

은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개인 기부 총량이 1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반면 Giving Korea에서는 동일 기간 동안 4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미루어볼 때, 재정패널의 표본이탈 가능성이 두 자료간의 추정량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재정패널의 설문방식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재정패널에서는 가구조사 설문에서 가구원의 기부금을 조사한다. 가구조사는 가구원 중 가구의 경제상황을 가장 잘 아는 1인이 대표로 응답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처 다른 가구원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재정패널에 포함된 모든 가구원에게 각각 기부금 지출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Giving Korea의 결과와 어느 정도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논거는 이러한 가능성이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해 누락된 개인 기부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은 결국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개인 기부 총량을 추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보여주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개인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기부의 총량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자료의 조사결과와 비교하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개인 기부 총량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를 기존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재정패널 자료로부터 추정한 우리나라 개인 기부 총량은 국세청의 기부금 특별공제 신고금액보다는 높고,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조사한 Giving Korea 자료로부터 추정한 금액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두 자료에서 추계된 총량이 재정패널 추정량의 95% 신뢰구간 밖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기존 자료를 활용한 결과를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 재정패널 표본의 대표성, 설문방식의 문제점, 기부금을 포괄하는 범위의 차이 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보다 신뢰할만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한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서로 보완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론에도 밝혔듯이, 개인 기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자의 관심부족보다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에 기인한 면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기부관련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앞으로의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재정패널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된 만큼 작년 말 도입된 종합소득 특별공제 한도설정이 개인의 기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이후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는데 재정패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참 고 문 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 강철희 · 민인식, 「한국인의 기부 Trend 및 총규모 추계」, 「제10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 2010」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0.
- 박주언 · 이희길, 「나눔통계 개선방안」,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2011년 하반기-3, 2011.
- 손원익 · 박태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
- 송헌재, 「재정패널 2차년도 이탈가구와 대체가구의 특성 분석」, 「재정학연구」, 제5권 제1호, 2012, pp. 97-133.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한국인의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 2001년 서베이 조사 결과분석」, 「Giving Korea 2002」, 2002.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04년도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 결과」, 「Giving Korea 2004」, 2004.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한국인의 기부지수 발표 및 미래세대를 나눔의 세대로 키우기 위한 전략」, 「제6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 2006」, 2006.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07년도 한국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제8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 2008」, 2008.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09년도 한국인의 개인 기부지수 결과 발표」, 「제10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 2010」, 201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사업팀, 『1~5차 재정패널 조사 사용자안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